##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45 발의연월일: 2020. 10. 16.

발 의 자: 오영훈·남인순·류호정

문진석 · 서동용 · 송재호

안민석 · 양정숙 · 오영환

위성곤 · 이성만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를 개정하여 2017.1.1.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의 일원화로 국민의 고용보험 업무처리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 등을 개선한 바 있음.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존치로여전히 고용보험 적용·보험료부과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민원처리 혼선으로 지역민의 불만이 높음.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 고용보험 관련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함.

이에 다른 지역민들과 달리,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근로복

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402조제3항).

아울러, 2019.8.27. 공포되어 2020.8.28.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의 신고 의무로 되었던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02조제3항 및 제4항).

#### 법률 제 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2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를 "「고용보험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확인의 청구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청구·제출로 보며, 이에 대한 수리·확인은 고용노동부의 행위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	③ 「고용보험법」제20조
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	
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	
<u>16조, 제17조, 제20조</u> (일자리 함	
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	
유망업종·지역특화산업, 국내	
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	
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	
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	
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	
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	
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	
정한다), 제25조제1항(정규직전	

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 금, 일·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 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 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 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 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 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 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 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 의 지도·감독에 한정한다), 제 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 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 용정보의 수집 · 분석과 직업안 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보급,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 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 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 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1 항・제2항, 제44조, 제47조, 제5 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 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61조, 제62조제1항・제3 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 항・제2항, 제66조제1항, 제67 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3 조, 제74조, 제77조, 제93조제3 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 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직업안정

<ul><li></li><li>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1</li></ul>
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1
④ <u>「고용보험법」 제43조제1</u> <u>항・제2항・제4항</u>

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